

#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績

The Publication and Book-covering of *Gungwonui*(宮園儀)  
in the Late Joseon Period

조 계 영(Cho, Gye-Yo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宮園儀」의 進上·奉安·頒賜 |
| 2. 「宮園儀」의 刊印 | 5. 맺음말             |
| 3. 「宮園儀」의 粧績 | <참고문헌>             |

## < 초 록 >

「宮園儀」는 조선왕실에서 왕족들을 위한 별도의 廟墓制인 宮과 園에 대한 의례인 宮園制를 왕실의례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간인된 책 중 하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현전하는 「宮園儀引」(장K2-2433)에는 1785년 校書館에서 重刊한 「宮園儀」의 刊印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粧績을 마치고 進上和 奉安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본고는 「궁원의의」의 기록과 장서각과 규장각에 현전하는 「궁원의」를 통해 「궁원의」의 刊印과 粧績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궁원의」는 1776년에 編成하여 1780년에 新刊하였으며 1785년에 重刊하였다. 「궁원의」는 編題·御製·圖說·座目に 해당하는 63장을 목판으로 印出하였으며, 目錄·儀註·附錄·跋에 해당하는 91장을 활자로 印出하였다. 「궁원의」는 景慕宮 奉安件·奉謨堂 奉安件·進上件·頒賜件에 따라 장황 재료가 차별되었다. 경모궁의 冊印穢에 봉안한 「궁원의」는 貼冊紙로 印出한 후 藍大緞으로 장황하여 왕실서책의 位格을 갖추었다.

「궁원의」는 정조가 사도세자에게 「莊獻」이라는 존호를 추상한 후 宮園制를 적용하여 景慕宮과 永祐園으로 승격시킨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본 논문은 宮園制를 왕실의례로 正統화하는 과정에서 간인된 서책으로서 「궁원의」의 간인과 장황을 조명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要語 : 「宮園儀」, 景慕宮, 永祐園, 刊印, 粧績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newlycho@paran.com)

접수일: 2006년 11월 11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ABSTRACT>

*Gungwonui*(宮園儀) is one of the books published to institutionalize the Gungwon system as the official graves and shrines for the royal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The Gungwon system covers both Gung, the shrine of the royal family and Won, the tombs for them. *Gungwonuiin*(宮園儀引)(Jang K2-2433), which is now held by the Jangseogak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ocuments all the process from the discussion about the publishing and book binding of *Gungwonui* to presenting it to the king and the royal shrine. This paper examined the publication and book covering of *Gungwonui* through *Gungwonuiin* and *Gungwonui* in Jangseogak and Gyujanggak.

*Gungwonui* compiled in 1776, was first published in 1780, and again in 1785. *Gungwonui* was published on 63 wood blocks which contain the title, king's preface, illustrations and their captions, and the list of supervisors, but 91 leaves of *Gungwonui* were printed with movable types, containing the table of contents, detailed notes, appendix and postscripts. Various covering materials of *Gungwonui* wer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that is, for the offerings to Gyeongmogung, Bongmodang, and king and for the royal granting to the subjects. *Gungwonui* enshrined in the noble book cabinet of Gyeongmogung was printed on Cheopchaekji (貼冊紙) and covered with Namdaedan(藍大緞), and therefore exhibited the noble elegance as the royal publication.

*Gungwonui* documents the historical fact that King Jeongjo offered a posthumous title of 'Jangheon(莊獻)' to the Crown prince Sado and promoted his grave and shrine to the level of Gung and Won, that is, Gyeongmogung and Yeongwoowon, with the Gungwon system. In this paper, examined were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and book-covering of *Gungwonui*, the book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Gungwon system into a regular royal ceremony.

Key words : *Gungwonui*, Gyeongmogung, Yeongwoowon, book-covering

## 1. 머리말

조선후기에 숙종·영조·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실의 계보와 선왕들의 기록을 정리하여 「璿源系譜紀略」·「國朝寶鑑」·「列聖御製」·「列聖誌狀通紀」 등을 간인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왕실은 왕실의례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왕실의례와 관련된 서책들을 간인하였다. 이 서책들의 書名에는 주로 ‘定例’ 혹은 ‘式例’의 용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國婚定例」·「度支定例」·「宮園式例」 등이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宮園儀」의 刊印과 粧績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궁원의」는 조선왕실에서 왕족들을 위한 별도의 廟墓制인 宮과 園에 대한 의례인 宮園制를 왕실의례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간인된 책 중 하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현전하는 「宮園儀引」(장K2-2433)에는 1785년 교서관에서 중간한 「궁원의」의 간인·장황·진상·봉안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첫머리에 「御製宮園儀引」이 나오고 그 다음 몇 장이 落張된 채로 「監印廳書啓秩」이 시작되어 「宮園儀引」으로 서명을 삼은 듯하다.<sup>1)</sup> 그러나 이 책은 감인청을 설정하여 「궁원의」를 간인하는 과정과 상황을 마친 「궁원의」를 경모궁으로 봉안하려 가는 행렬을 그린 반차도를 수록하고 있는 「宮園儀監印廳儀軌」이다. 1814년의 「外奎章閣形止案」(奎9140)을 보면 東三卓에 수장된 의례 목록에 「궁원의감인청의례」 1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장서각에 소장된 「궁원의인」의 정확한 서명은 「궁원의감인청의례」이다.<sup>2)</sup>

조선왕실의 五禮 가운데 吉禮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역대 국왕과 왕비를 모신 宗廟와 陵廟에서의 祭禮는 社稷에 대한 예와 함께 가장 중시된 의례였다. 역대 국왕과 왕비가 종묘와 능묘에서 향사를 받았던 반면 종묘에 들

1) 「宮園儀引」의 冊衣는 改粧 되었으며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宮園儀引. 筆寫本. 1冊(34張) 班次圖：四周單邊 半郭 33.4 × 25.8 cm, 朱絲欄 有界 12行24字 註雙行, 無魚尾； 44.8 × 32.5 cm

2) 본고에서 「궁원의인」을 지칭할 때는 御製 「宮園儀引」과 구별하기 위해 「궁원의감인청의례」 또는 의례로 부르고자 한다.

수 없는 왕족들은 陵墓보다 규모가 작은 墓에 묻혔으며 신주는 別廟에 모셨다가 代가 다하면 祧遷하는 게 보통이었다. 왕족들 중에서 국왕의 私親이나 祖母, 王世子, 王世子嬪, 王世孫 등 일반 왕족들보다 한단계 위격이 높으면서도 종묘에는 들 수 없는 왕족들을 위한 별도의 廟墓制가 宮園制인데, 이는 조선후기 영조대에 처음 시작되었다.<sup>3)</sup>

영조는 1753년 경복궁 북쪽에 있던 私親 崔氏의 廟인 毓祥廟를 毓祥宮으로 승격시키고, 楊州에 있던 淑嬪墓를 昭寧園으로 封園하여 사친의 廟와 墓에 대한 등급을 한단계 격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제례의 등급도 높였다. 영조대 육상궁과 소녕원에서 비롯된 조선 특유의 廟墓제도인 宮園制는 후왕들에 의해 祖宗前例로 계승되었다.<sup>4)</sup> 영조는 궁원제를 확고한 조종전례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육상궁과 소녕원을 봉한 직후인 1753년 6월에 宮園의 式例를 정하도록 명하여 「宮園式例」가 완성되었다.<sup>5)</sup> 「궁원식례」는 4책을 만들어 規에 담아 육상궁·소녕원·예조·봉상시에 보관하도록 하였다.<sup>6)</sup>

「궁원식례」는 영조가 왕위계승의 정통성 확립하고 왕실의례를 제도화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간인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의 사상적·정치적 지향을 계승한 정조는 영조에 의해 초석이 놓인 궁원제를 조종전례로서 계승하였다. 「궁원의」는 이러한 조선왕실의 사상적·정치적 흐름에서 정조의 명에 의해 1780년과 1785년에 두 차례 간인된 책이다.<sup>7)</sup>

3) 宮園制에 대한 선행연구는 鄭景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서울학연구』23, 2004); 임민혁, 「영조의 사친추숭과 宮園制」(『藏書閣 소장 英祖 御製類의 정리 및 해제 연구』, 2006)가 있다.

4) 영조대 이후 궁원제가 창시된 과정과 그 예학적인 의의, 영조대 이후 궁원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정경희의 앞의 논문을 참조.

5) 「궁원식례」에 나타난 육상궁과 소녕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임민혁, 「영조의 사친추숭과 宮園制」(『藏書閣 소장 英祖 御製類의 정리 및 해제 연구』, 2006) 참조.

6) 「毓祥宮昭寧園式例」(장K2-2474) “癸酉六月二十七日 傳曰 毓祥宮昭寧園 凡諸規式書下令該曹作爲四冊 本宮本園禮曹奉常寺盛槓以置”

7) 「宮園儀」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宮園儀. 木板本 活字本 混入. 2卷2冊 圖說: 四周單邊 半郭 24.7 × 17.2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36.0 × 23.3cm

## 2. 「宮園儀」의 刊印

먼저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 1780년 4월 교서관에서 「궁원의」를 新刊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는 즉위 직후 사친인 思悼世子에게 ‘莊獻이라는 존호를 추상하고 垂恩墓를 永祐園으로 垂恩廟를 景慕宮으로 승격시켰다.<sup>8)</sup> 이 때 도성 북부 順化坊에 있던 수은묘를 동부 崇教坊으로 옮기었다. 정조는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도를 정할 때 경모궁과 영우원의 위격이 종묘와 능묘보다 한 등급 낮고 다른 궁원보다는 한 등급 높은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곧 정조는 세자의 궁원은 국왕 사친의 궁원보다 위격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1776년 정조가 지은 「宮園儀引」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情과 禮가 잘 드러나 있다.<sup>9)</sup>

너무도 슬픈 말은 길지가 않고, 감정이 애절하면 오히려 무감각해진다.  
 소자가 지금 15년을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선왕의 은혜를 입어 大基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친께 시호를 莊獻으로 올리고, 宮은 景慕, 園은 永祐로 하여  
 宗伯臣으로 하여금 모든 의식을 그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제기와 악기 등을 宗廟에 비해 한 단계 낮게 정하였다.  
 저 세상에 계신 영령께서 이 소자의 마음을 알고 계실는지  
 승정 이후 세 번째 병신년에 피눈물로 삼가 리을 쓴다.<sup>10)</sup>

1779년 11월에 쓴 이복원의 跋文에 의하면 정조는 즉위초부터 궁원을 극진히 높여 궁원의 祝號와 祝式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정조는 각신 李福源과 예조참의

8)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10월 7일 “丙申 追上諡號曰莊獻 改宮號曰景慕 園號曰永祐 癸卯 追上尊號曰經德敦慶 甲辰 又追上尊號曰弘仁景社 廟中祭禮 降太廟一等 園儀亦準此”

9) 「궁원의」 부록에 나와 있는 1776년 3월 10일 전교에도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정과 예가 잘 드러나 있다. “嗚呼 寡人 思悼世子之子也 先大王爲宗統之重 命予嗣孝章世子 嗚呼 前日上章於先大王者 大可見不貳本之予意也 禮雖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饗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可與太廟同”

10) 「궁원의」, 「御製宮園儀引」 “夫其言絕悲者不長 其情至痛者如無 小子 今十五年不死 非不知死也 荷先王恩 承大基上 先親諡莊獻 宮曰景慕 園曰永祐 俾宗伯臣 撰儀如斯 若樽壘之品 磬筦之列 下宗廟一等 尙知小子之心 於冥冥中云爾 崇禎三丙申泣血謹引”

柳義養에게 궁원의 儀物을 그리고, 궁원에 대한 儀註를 서술하여 상하권으로 엮도록 명하고 「궁원의」라고 이름지었다.<sup>11)</sup> 「궁원의」에 수록된 범례와 대의는 종묘보다 내렸고 園은 陵보다 내리고 墓 보다는 높게 하여 예의 차등을 두었다. 圖說은 「國朝五禮儀」를 바탕으로 하고 「大明集禮」와 「樂學軌範」을 참고하였다. 儀註는 「궁원식례」에서 채록하고 五享殷典과 九章盛服을 증보하였다. 「궁원의」는 1776년에 이미 編成하였으나 그 후 4년 동안 編次를 고쳤는데 덜거나 보탠 모든 사항은 稟裁를 거쳤다.<sup>12)</sup> 「궁원의」의 附錄에는 1776년 3월 10일부터 1779년 10월 21일까지의 경모궁과 영우원에 대한 논의들이 傳敎와 啓辭를 중심으로 날짜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780년 4월 교서관에서 「궁원의」를 新刊하였는데, 홍국영이 명을 받들어 글씨를 쓴 「御製宮園儀引」과 이복원의 발문을 수록하였다.<sup>13)</sup>

1780년 「궁원의」가 신간된 후 정조는 호조판서 金華鎭에게 「궁원의」를 增修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조는 1785년 5월 禮曹判書 李福源에게 「궁원의」를 증수하는데 전력하도록 명하였다.<sup>14)</sup> 5월 20일에 정조는 1780년 「궁원의」를 인출한 후 宮園에 관계되는 傳敎와 舉條

- 11) 「羣書標記」의 丙申年 命撰書에 宮園儀四卷 刊本'으로 기록되어 있어 1776년에 「궁원의」를 新刊한 것으로 착오할 수 있다. 그러나 「궁원의」를 궁원의 儀文 과 儀物을 모아一部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1780년 신간할 때 저본으로 삼은 「궁원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계 있는 1785년 8월 9일의 傳敎가 「궁원의감인정의궤」의 質典 秩」에 나온다. 정조는 「궁원의」를 경모궁에 봉안한 후 「궁원의」를 편수한 여러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고 하교하기를 “「궁원의」를 병신년에 비록 이미 편성하였으나 그 후에 간간이 삭제하고 윤문하는 일이 많아 지금에야 비로소 역사를 마쳤다”고 하였다. 이 전교는 같은 날 실록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弘齋全書」 권 183, 羣書標記 2-3, “此編 卽宮園儀文儀物之哀爲一部者也...掌編摩者 閣臣李福源 禮曹參議柳義養也”: 「궁원의감인정의궤」 質典 秩, 乙巳八月初九日 “宮園儀 丙申雖已編成 伊後問多刪潤 至今番始得完役: 「정조실록」 권 20, 정조 9년 8월 9일.
- 12) 「宮園儀」跋 “編次閱四歲更數 臣有損有益 悉經稟裁 不惟資祝史 一時之考據 盖將百世以俟聖人而不惑”
- 13) 1782년 5월 6일에 경모궁 대향에 친행할 때 서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安川君 李桂가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대신들에게 의논을 내렸다. 이 때 新刊한 「宮園儀」에도 誓戒에 대해서는 실려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조실록」 권 13, 정조 6년 5월 6일.
- 14) 「궁원의감인정의궤」 “--(增)修之命 已經多年而尙未告完 卿方在禮曹 專意舉行 俾卽成書 戶判金華鎭 初既承命 同爲舉行 加也”

를 중간본 「궁원의」에 모두 입록할 것을 명하였다. 이 일은 이복원과 景慕宮提調인 鄭昌聖이 거행하여 6월 28일에 중간본 「궁원의」의 出草를 마쳤다. 따라서 중간본 「궁원의」 부록에는 신간본 부록 뒤에 1779년 11월 6일부터 1785년 6월 13일까지의 논의가 침록되어 있다.<sup>15)</sup>

6월 28일에 경모궁제조 정창성을 監印堂上으로 景慕宮令 吳翼煥을 監印郎廳으로 임명하였다.<sup>16)</sup> 「궁원의감인청의례」에는 「궁원의」를 간인할 때 校正과 監印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인 座目이 跋文 다음에 나와 있다. 1780년에 「궁원의」를 新刊할 때와 1785년 重刊할 때의 좌목은 다음과 같다. 1785년 重刊時의 좌목에서는 1780년 신간할 때 교정을 맡았던 이들을 ‘編修라고 기록하였다.

<표 1> 「宮園儀」 刊印時 座目

간인년도	담당업무	담당자	의례(실록)
1780년 4월 新刊	校正 (重刊本編修)	戶曹判書 金華鎮	
		禮曹判書 李福源	
		禮曹參判 沈履之	
		弘文館修撰 柳義養	監董官: 校書館校理
	監印	弘文館副校理 李時秀	
弘文館修撰 金宇鎮			
1785년 7월 重刊	增補	判中樞府事 李福源	校正大臣(摠裁大臣)
		漢城府尹 鄭昌聖	
	監印	漢城府尹 鄭昌聖	堂上(編校堂上)
		景慕宮令 吳翼煥	郎廳(景慕宮令)

「궁원의감인청의례」에는 경모궁에 봉안한 「궁원의」의 卷帙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sup>17)</sup> 권질에는 <표 2>와 같이 「궁원의」에서 목판과 활자로 인출한 부분을 구분하여 밝혀 놓았다. 즉 「궁원의」 2책은 목판으로 인출한 63장과 활자로 인출한 91장

15) 중간본에 수록한 「어제궁원의인」은 이복원이 명을 받들어 글씨를 쓴 것으로 교체되었으며, 발문은 신간본과 마찬가지로 1779년에 지은 이복원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16) 경모궁에 소속된 관원은 都提調 1員·提調 1員·令 1員·直長 1員·奉事 1員·部將 1員이 있다. 도제조는 時原任大臣에서 제조는 2품 이상에서 擬望 하며, 승은 2품 문관이 맡았다. 「궁원의」 卷之上 「景慕宮儀」 「宮司率屬」.  
 17) 「궁원의감인청의례」, 「景慕宮奉安宮園儀卷帙共二冊」.

으로 총 154장으로 구성되었다. 18) 「궁원의」 인출시에 사용한 활자에 대해서는 의뢰나 「군서표기」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나 「궁원의」는 신간본과 중간본 모두 도서관에서 간인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壬辰字로 인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9)

<표 2> 重刊本 「宮園儀」의 卷帙

上卷 72장	編題 1장 刊印
	御製 2장 刊印
	宮園儀圖說目錄 10장 活印
	圖說 59장 刊印
下卷 82장	宮園儀儀註目錄 2장 活印
	宮園儀儀註 卷之上 47장 活印
	宮園儀儀註 卷之下 13장 活印
	宮園儀附錄 17장 活印
	跋 2장 活印
	座目 1장 刊印

권질에 가장 먼저 나오는 ‘編題’는 ‘宮園儀 乙巳孟秋 芸閣重刊’으로 書名과 刊記를 목판으로 인출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근간된 고서와 현대서에서 본문 앞에 별도로 마련한 종이에 표시된 題名을 ‘標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 ‘編’은 ‘엮다·배다’의 뜻으로, 책을 찬술하거나 책 자체를 의미한다. 21) 編題는 面紙 다음에 오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封面葉’ 또는 ‘內封面’으로 부른다. 22) 중국 봉면엽의 일반적인 형식은 四周의 광곽 안에 3行으로 글자를 새긴다. 가운데 行에 大字로 書名을 새기고, 조금 작은 字로 오른쪽 行에 撰·著·編·選者를 새기고, 왼쪽 行에는 藏版 혹은 刊印者를 새긴다. 그리고 上邊의 광곽 밖에

18) 「궁원의감인청의뢰」에는 하권에서 82장을 활자로 인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 중간본 「궁원의」와는 한 장의 차이가 있다.  
 19) 「궁원의」를 丁酉字로 간행한 후 번각하여 반사하였다고 본 선행연구가 있으나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頒賜에 관한 研究,” 「書誌學報」創刊號(韓國書誌學會, 1990), 58.  
 20) 천혜봉, 「한국 서지학」(민음사, 1997), 558.  
 21) 「羣書標記」에 ‘編摩’·‘此編’·‘右戊午編’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篇’과는 구분되는 의미를 알 수 있다.  
 22) 朱賽虹, 「古籍修復技藝」(文物出版社, 2001), 7-8.

刊版의 年月을 새기기도 한다. 봉면엽은 중국의 明末과 清代의 刻本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판본을 감정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

「宮園의」의 편제를 보면 상하좌우의 광곽 안에 세 줄로 나뉘어 있으며 중간의 행에 大字로 ‘宮園儀’를 썼다. 小字로 왼쪽 항에는 ‘芸閣重刊’을, 오른쪽 항에는 ‘乙巳孟秋’를 새겼다. 「宮園의」의 편제는 중국 봉면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오른쪽에 찬저편선자를 새기는 대신 간인년월을 새긴 것이 차이날 뿐이다. 이와 같은 편제는 1784년에 간인된 「奎章閣志」와 「弘文館志」에서도 볼 수 있다.<sup>23)</sup> 이는 정조가 인쇄문화에서 중국의 유행을 수용하였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즉 「宮園의감인청의례」의 「宮園의」 권질 기록을 통해 중국 서책의 봉면엽에 해당하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編題’라고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간본과 중간본의 「宮園의」 편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宮園儀」 編題

- 23) 「규장각지」의 편제는 ‘奎章閣志 甲辰新編 內閣活字’이고, 「홍문관지」의 편제는 ‘弘文館志 甲辰新印 芸閣活字’이다. 간기가 없을 경우 이와 같은 편제를 통해 간인년과 간인에 사용한 활자까지도 알 수 있다.
- 24) 정조는 1776년 사은부사로 북경에 가는 서호수에게 「欽定古今圖書集成」을 구입해오도록 하였다. 중국에서 구입해 온 「홍정고금도서집성」은 평안감영에서 올려 보낸 蕙精紙로 개장하고 書名과 部目を 써 넣었다. 趙啓榮,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幀과 保存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26-27.

1785년 「궁원의」를 중간하기 위한 논의에서부터 8월 9일 경모궁에 봉안하기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궁원의감인청의례」는 「궁원의의인」 다음에 몇 장이 落張되어 정조가 1780년에 「궁원의」를 新刊한 뒤 김화진에게 증수를 명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기록부터 나온다.

<표 3> 重刊本 「宮園儀」의 刊印 過程

일자	간인 과정
-	- 예조판서 이복원에게 김화진과 함께 「궁원의」 增修에 전력할 것을 명함
5월20일	- 1784년 上號후의 儀註와 樂章을 「궁원의」에 添錄하고, 1780년 印出한 후 궁원에 관련된 傳敎와 擧條를 모두 入錄하도록 명함 : 이복원과 景慕宮提調 정창성이 入錄을 담당하도록 명함 - 景慕宮宿 오익환을 郎廳으로 삼음
6월28일	- 「궁원의」 出草를 마침 - 정창성을 監印堂上, 오익환을 監印郎廳으로 삼음 - 「궁원의」 內入件數를 백면지 20건과 백지 20건을 인출하여 내입하도록 명함 - 진상건과 반사건을 각각 백면지 10건과 백지 10건씩 인출
7월 2일	- 「궁원의」 반사건으로 첩책지 30건과 권책지 50권을 추가로 인출할 것을 명함 - 「궁원의」 간인 시작 : 木板 刻役 시작
7월 9일	- 活字 印役 시작
7월20일	- 「궁원의」 간인을 마치고 진상일자를 7월 22일로 추택하여 아뢰 - 秋涼한 때를 기다려 다시 백일하여 초기할 것을 명함 - 진서한 후 궁원의 1건을 緞衣로 장황하여 靛에 담아 경모궁 冊印機에 봉안할 것을 명함
8월 1일	- 감인청에서 「궁원의」 진상일자를 8월 7일로 아뢰 - 진서일자를 秋享 前 1일로 명함 - 園謁과 相值하니 10일 전으로 추택하여 들이라고 명함
8월 7일	- 「궁원의」 진서를 8월 9일로 정함. - 진서시의 服色으로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고 바로 봉안의를 행할 것을 명함 - 8월 9일은 추향대제이니 受香 奉安후 省牲省器를 진행하고 궁에 돌아올 것을 명함 - 「궁원의」를 받들고 경모궁에 나갈 때 腰輦에 안치하여 校正諸臣들이 뒤따르도록 명함 : 班次는 冊印을 올릴 때의 예에 의해 駕前陳路하여 弘化門과 館規를 통과하도록 분부
8월 8일	- 「궁원의」를 進書할 때 讀序文官을 생략하도록 명함 - 申時(오후 3시-5시)에 「궁원의」 封囊
8월 9일	- 卯時(오전 5시-7시)에 「궁원의」 進上 - 辰時(오전 7시-9시)에 奉讓堂에 「궁원의」 봉안 -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에 경모궁에 「궁원의」 親上 - 賞典

1785년 5월 20일 「궁원의」 간인에 대한 논의부터 「궁원의」가 완성되어 경모궁에 봉안한 8월 9일까지는 80여일이 소요되었다. 1785년에 인출한 「궁원의」는 120건으로 印出紙에 따른 인출건수는 <표 4>와 같다. 경모궁과 봉모당에 봉안하는 「궁원의」 1건은 貼冊紙로 인출하였다. 진상건은 백면지와 백지로 각각 10건씩 20건을 인출하였다. 반사건은 첩책지 28건·권책지 50건·백면지 10건·백지 10건으로 총 98건을 인출하였다.

<표 4> 1785년 「궁원의」 印出件數

印出紙	貼冊紙	卷冊紙	白綿紙	白紙	總件數
景慕宮 奉安件	1건	-	-	-	1건
奉謨堂 奉安件	1건	-	-	-	1건
進上件	-	-	10건	10건	20건
頒賜件	28건	50건	10건	10건	98건
總件數	30건	50건	20건	20건	120건

1785년에 간인된 「궁원의」의 진상건과 반사건에 사용된 인출지를 1782년 「국조보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인출지 사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782년 「국조보감」의 진상 50건은 첩책지 3건·권책지 5건·백면지 22건·백지 20건을 인출하였고, 반사건은 백지 50건을 인출하였다.<sup>25)</sup> 그런데 「궁원의」 진상건은 백면지 10건과 백지 10건만을 인출하였고, 반사건은 첩책지 28건·권책지 50건·백면지 10건·백지 10건을 인출하였다. 이는 진상건을 인출하는데 사용되었던 첩책지와 권책지를 반사건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국조보감」의 경우와 다르다.<sup>26)</sup>

첩책지의 품질은 草注紙로 進上冊子에 쓰였고, 권책지는 楮注紙에 해당하는 품질로 반사와 여러 관서의 책자를 인출할 때 소용되었다. 첩책지와 권책지라는 명칭은 주로 교서관에서 사용하였고 장흥고에서는 이를 초주지와 저주지로 불렀다. 따라

25) 趙啓榮, 앞의 논문, 65-70.

26) 종이의 질이 上品인 순으로 나열하면 貼冊紙(1錢7分3里) > 卷冊紙(1錢) > 楮注紙(6分6里) > 白綿紙(5分5里) > 厚白紙(5分) > 白紙(2分2里) 가 된다. 孫溪鏞 「朝鮮時代 文書紙研究」(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37.

서 영조대에 종이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取用에 어려움이 있어 첩척지를 ‘貼冊紙 次草注紙’로 바꾸고, 권책지를 ‘卷冊紙 次楮注紙’로 바꾸기를 아뢰기도 하였다.<sup>27)</sup>

「궁원의」를 인출하는데 부역하였던 員役과 工匠의 수와 부역일자는 監印廳에서 호조와 병조에 料布 지급을 위해 보낸 關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sup>28)</sup>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의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員役工匠秩」에 나와 있다.<sup>29)</sup> 감인청에서 호조와 병조에 보낸 관문을 참고하면 7월 2일 목판 刻役시에 부역한 공장은 28명이었으며, 7월 9일에 활자 印役시 부역한 공장은 31 명이다. 따라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궁원의」의 編題·御製·圖說·座目에 해당하는 63장의 木板 刻役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동원된 각수는 10명이므로 각수 한 명이 평균 6.3장의 목판을 새겼다고 할 수 있다. 「원역공장질」에는 11명의 각수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활자를 인역하는데 부역한 2명의 각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 5>은 각수와 인출장이 사용한 도구와 재료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刻手와 印出匠의 所用物品

刻手 所用物品		印出匠 所用物品	
刻刀 12箇	臺床布 12尺	半眞墨 每10卷 8錢式	土火爐 3箇
5寸丁 12箇	2寸丁 2箇	黃蜜 每10卷 4錢式	均刀 6箇
登床 4坐	中礪石 1塊	硯滴 2箇	雄尾里 1箇
家豬毛 2兩	延日礪石 2塊	沙唾口 1箇	火丁 1箇
炭 1斗	膠末 2升	柳箕 2部	廣刀磨 3坐
-	-	校正釘 2箇	廣頭釘 180箇

27)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8월 2일 계유.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2월 11일 을해 “(戶曹判書 金)相福曰 校書館有貼冊紙卷冊紙 而貼冊紙則紙品 與長興庫草注紙同 卷冊紙則與長興庫楮注紙同 而以其名色之不同 故不得通同取用 校書館紙 尙多遺在 長興庫紙 每患可用矣 自今爲始 校書館貼冊紙名色 改以貼冊紙次草注紙 卷冊紙名色 改以卷冊紙次楮注紙 而均其價通其用 則可無彼多遺在 此有加用之弊矣 上曰 紙品申飭 久矣”

28) 「宮園儀監印廳儀軌」, 「監印廳移文秩」 乙巳七月日 戶兵曹公事.

29) 의궤에서는 工匠을 ‘匠手’라고 부르거나, 刻手를 ‘刻手匠’으로 칭하기도 한다. ‘手’자가 들어가는 공장은 刻手와 木手이다. 「궁원의감인청의궤」, 「監印廳甘結秩」, 乙巳七月初二日 “一 爲進排事 宮園儀印役時 各匠手所用雜物 後錄捧甘爲去乎 依此進排事”: 「國朝寶鑑 監印廳儀軌」, 「監印廳員役工匠等別單」(서울대학교 奎章閣 영인본, 1997년), 352.

목판 각역에 부역한 寫字官·補字官·畫員 5인은 활자 인역시에는 참여하지 않고 목판의 付板正書를 위해 부역하였다. 除刻匠 1명과 磨板軍 1명도 목판을 새길 때에만 부역한 장인이다. 목판 각역과 활자 인역시에 모두 부역하였던 장인은 창준과 인출장이다. 목판 각역시의 印出匠은 4명이 부역하였는데 의궤에는 활자 인역시의 인출장 3명을 포함하여 6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이 중 한 명이 목판과 활자를 인출할 때 모두 부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唱準은 목판 각역에 4인이 부역하였고 활자 인역시에는 6인이 부역하였다. 의궤에는 창준 8인의 이름이 있어 두 사람이 목판과 활자 인역시에 모두 동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궁원의」의 圖說目錄·儀註目錄·儀註·附錄에 해당하는 91장의 활자 인역이 진행되었다. 守穢諸員 10인과 均字匠 6명은 활자 인역시에만 부역하였던 장인이다. 均字장은 「移文秩」에는 6명이 부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員役工匠秩」에는 7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표 6>은 수장제원과 均字장이 사용한 도구와 재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守穢諸員과 均字匠의 所用物品

守穢諸員 所用物品	均字匠 所用物品	
白筆 1柄	塡空 白休紙 每板8錢式	廣頭丁 1箇
礪朱紅 1兩	均刀 6箇	登床 3坐
常沙鉢 1箇	莛執巨 各1箇	陶東海 1箇
靑竹 2節	靑竹 2節	-

또한 莛匠 1명과 見張使令 1명 역시 활자 인역시에만 동원되었던 장인이다. 목판 각역과 활자 인역에 동시에 부역한 畵役과 公장은 冊色書吏와 小木匠이다. <표 7>은 「궁원의」를 인출할 때 부역한 員役과 工匠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에 소속된 이들은 대부분 1782년 「국조보감」 간인시에 부역하였던 공장들이다.<sup>30)</sup> 이들의 月料布는 호조에서 지급하는 米 9斗와 병조에서 지급하는 布 2疋 씩이었다

30) 「國朝寶鑑監印廳儀軌」, 「監印廳員役工匠等別單」·「工匠秩」(서울대학교 奎章閣 영인본, 1997년), 351-376.

<표 7> 1785년 「궁원의」 印役時 付役 員役과 工匠

工匠	木板刻役	活字印役	員役 및 工匠의 姓名	소속관서
冊色書吏	1인	1인	朴世周 宋道協	교서관
移差書吏	1인	-	劉一鎭	병조
寫字官	2인	-	玄喜靜 皮快	-
畫員	2인	-	金國臣 朴仁秀	-
補字官	1인	-	朴泰裕	교서관
唱準	4인	6인	張文郁 金致曄 申大中 金鎭漢 金始潤 金聲鎭 張文輝 鄭益蕃	교서관
守權諸員	-	10인	柳東蕃 李世徵 朴遂良 李澈根 權信興 禹弘道 鄭興良 片興祥 金大喆 尹昌孫	교서관
刻手	10명	2명	李時泰 南太伯 田得春 石德崇 李壽恒 朴就安 劉澤龍 金德麗 朴順興 崔福煥 李再春	교서관
均字匠	-	6명	孔聖麟 林春芳 任大福 金致復 郭萬年 郭萬金 金鐵金	교서관
印出匠	4명	3명	韓巨福 李完俊 李壽長 宋福祥 韓仁得 韓國柱	교서관
小木匠	1명	1명	李厚根	교서관
除刻匠	1명	-	金道元	교서관
磨板軍	1명	-	-	-
鋸匠	-	1명	-	-
見張使令	-	1명	李成雲(호조) 高得伊 劉命福	교서관
名數	28명	31명		

### 3. 「宮園儀」의 粧幀

1785년 7월 20일 감인청에서 「궁원의」 간인을 완료하여 진상일자를 7월 22일로 추택하였음을 아뢰었다. 7월 2일부터 간인을 시작하여 「궁원의」 120건의 목판 63장과 활자 92장을 인출하는 데 소요된 기일은 18일이었다. 따라서 「궁원의」 120건의 장황은 7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5년에 간인한 「궁원의」는 경모궁봉안 1건·봉모당봉안 1건·진상 20건·반사 98건이다. 이들은 봉안·진상·반사에 따라 인출지와 장황 재료가 차별되었다.

「宮園의」의 용도에 따라 每冊에 들어가는 裝潢 재료는 <표 8>과 같다.

<표 8> 1785년 「宮園의」 裝潢 재료

粧縵 材料		景慕宮 奉安件	奉謨堂 奉安件	進上件	頒賜件
印出紙		貼冊紙	貼冊紙	白綿紙/白紙	貼冊紙/卷冊紙 白綿紙/白紙
冊衣	冊衣	藍大緞	黃染草注紙 1장	黃染草注紙 半張	黃染楮注紙 半張
	後褙	楮注紙 2장	楮注紙 4장	楮注紙 2장	楮注紙 2장
面紙		草注紙 1장	草注紙 2장	草注紙 1장	楮注紙 1장
空隔紙		草注紙 1장	草注紙 2장	草注紙 1장	-
題目	題目	白貢緞	-	-	-
	紅挾	紅貢緞	-	-	-
膠末		1合	1合	1合	1合
燒木		半半箇	半半丹	半半丹	半半丹
冊絲		紅眞絲 5分	紅眞絲 8分	紅眞絲 8分	紅鄉絲 8分
黃蜜		-	4分	4分	4分

「宮園의감인청의궤」에 기록된 「宮園의」의 裝潢 재료는 裝書각과 규장각에 現存하는 實物을 通하여 확인할 數 있다. 이들 「宮園의」에는 內賜記와 印章이 남아 있어 收藏處를 알 數 있으며, 「內閣日曆」에 나타난 「宮園의」의 賜給 기록을 참고 할 數 있다. 裝書각에 現存하는 「宮園의」는 모두 8건으로 <표 9>과 같다. 裝書각에 現存하는 新刊本 「宮園의」는 1번(장K2-2428)과 2번(장K2-2432A)이다. 1번은 上冊 紙衣의 오른쪽 下단에 「禮曹上」이 墨書되어 예조에서 수장하였던 책이라는 것을 알 數 있다. 이 책의 앞 面紙에는 「乾隆四十一年十二月三十日 內賜禮曹 宮園儀一件 命際謝恩 右承旨臣趙」라는 內賜記가 있다. 이 책은 1780년 4월 新刊本의 편제 가 있는데 1776년 12월 30일에 내사되었다는 것과 반사를 담당한 右承旨의 着名 이 없는 것의 의문점이 있어 좀더 깊이 있는 研究가 필요하다.

그 외 3번에서 8번까지는 重刊本 「宮園의」이다. 3번(장K2-2431A)은 경모궁 에 봉안하였던 「宮園의」이다. 이 책은 [앞책의 → 앞면지 → 앞공격지 → 인출지 → 뒷공격지 → 뒷면지 → 뒷책의] 로 裝潢하였다. 冊衣는 藍大緞 으로 裝潢하였고 책의의 뒷면은 楮注紙로 배접하였다. 책의를 배접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草注

紙로 面紙를 대었다. 책의는 서책의 상하에 한 장의 종이나 絲織을 덧대어 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쓰임이 사람이 옷을 입어 몸을 보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冊衣를 ‘書衣’라고 하며, ‘書皮·封皮’라고도 부른다.<sup>31)</sup>

面紙는 서책의 책의와 공격지 사이에 있는 공백의 종지로 藏書家들이 보통 題跋·藏書記·識語 등을 기록하는데 이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면지를 ‘副葉’ 또는 ‘護葉’으로 칭한다.<sup>32)</sup> 면지 다음에는 空隔紙가 위치하는데 주로 봉안건과 진상건에 공격지를 두어 서책의 위격을 높였다. 3번(장K2-2431A)은 앞 공격지가 있을 위치에 編題가 대신하였으며, 뒷공격지는 본문이 끝난 다음에 있다. 장서각과 규장각에 현전하는 「궁원의」 중 뒷공격지가 있는 서책이 한결같이 앞공격지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편제가 앞공격지를 대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雲·犀角寶·錢寶·書寶·畫寶의 문양이 있는 남대단으로 장황하여 경모궁에 봉안한 「궁원의」이다.



<그림 2> 景慕宮 奉安件 「宮園儀」의 粧績

31) 朱賽虹, 「古籍修復技藝」(문물출판사, 2001), 6-7.

32) 朱賽虹, 「古籍修復技藝」(문물출판사, 2001), 8.

4번(장K2-2431B)은 3번과 인출지·면지·공격지의 紙品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봉모당 봉안건으로 추정된다. 의궤에는 봉모당 봉안건의 冊衣·後襟·面紙·空隔紙에 들어간 종이량이 경모당 봉안건과 진상건에 비해 두 배로 기록되어 있다. 4번은 의궤의 기록처럼 3번의 두배가 되는 수량은 아니지만 종이의 질은 동일하다. 의궤의 기록과 현전하는 실물을 조사하여 비교해보면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공격지·형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혹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궁원의감인청의궤」에는 外四處 史庫에 봉안한 「궁원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5번(장K2-2429A)은 적상산성 사고에 봉안한 「궁원의」이고, 규장각에는 오대산(奎3790)·태백산(奎1935)·정족산(奎2039) 사고에 봉안하였던 「궁원의」가 현전한다. 「내각일력」에 의하면 五處史庫에 卷冊紙로 인출한 「궁원의」를 賜給한 사실이 나와 있다.<sup>33)</sup> 따라서 외사처 사고에 봉안한 「궁원의」는 반사건 중에서 권책지로 인출한 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7번 「궁원의」(장K2-2432B)의 앞 면지에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景慕宮上 宮園儀一件 守僕房所在’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이 책은 경모궁의 守僕房에 비치해 두고 守僕들이 열람하였던 책으로 짐작된다. 수복방은 4間半의 규모로 香大廳 서쪽의 夾房이다.<sup>34)</sup> 경모궁에 소속된 守僕은 예조에서 擬入한 9인이 있었는데 3番으로 나누어 守直하였다.<sup>35)</sup> 장서각에 현전하는 1785년 「궁원의」의 인출지 품질을 上品의 순으로 열거하면 3번(=4번) 貼冊紙 > 5번 卷冊紙 > 7번 白綿紙 > 6번(=8번) 白紙의 순이다.

「궁원의」 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편제를 청색과 흑색 두 가지로 인출했다는 것이다. 6번과 8번의 편제는 흑색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는 청색으로 인출하였다. 청색으로 인출한 「궁원의」가 봉안이나 관서 반사건인 것으로 보아 청색의 편제를 갖춘 서책의 위격을 짐작할 수 있다.

33) 五處史庫는 춘추관·태백산·오대산·적상산·정족산 사고를 말한다. 이 중 춘추관사고를 內史庫라고 하고, 그 외의 사고를 外四處史庫라고 칭한다.

34) 「궁원의」 「景慕宮圖說」 “守僕房 四間半香大廳西夾”

35) 「궁원의」 卷之上 「景慕宮儀」 宮司率屬 “守僕九人 自禮曹擬入 分三番守直”

<표 9> 장서각에 현전하는 「궁원의」의 內賜記와 粧績

번호	內賜記 및 印章	장황 및 편제	크기 (cm)	청구기호
1	乾隆四十一年十二月三十日 內賜禮曹 宮園儀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趙 : [宣賜之記]	印出紙 : (卷冊紙) 紙衣 : 面紙1張 編題 : 靑色	35.2 x 22.9	장K2-2428
2	[宣賜之記]	印出紙 : (白綿紙) 紙衣 : 面紙1張 紙衣 · 冊絲 改粧 編題 : 靑色	35.0 x 22.8	장K2-2432A
3	無, 景慕宮 奉安件	印出紙 : 貼冊紙 藍大緞冊衣 · 面紙 · 空隔紙(冊絲 改絲) 編題 : 靑色	37.1 x 23.5	장K2-2431A
4	無(奉謨堂 奉安件)	印出紙 : 貼冊紙 紙衣 · 面紙 · 空隔紙 編題 : 靑色	36.9 x 23.5	장K2-2431B
5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赤裳山城史庫上 宮園儀一件 : [奎章之寶]	印出紙 : 卷冊紙 紙衣 · 面紙 編題 : 靑色	36.0 x 23.2	장K2-2429A
6	無	印出紙 : (白紙) 紙衣 · 面紙 編題 黑色	33.8 x 21.7	장K2-2429B
7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景慕宮上 宮園儀一件 守僕房所在 : [奎章之寶]	印出紙 : 白綿紙 紙衣 · 冊絲 改粧 編題 : 靑色	36.8 x 23.4	장K2-2432B
8	無	印出紙 : (白紙) 紙衣 · 冊絲 改粧 編題 : 黑色	34.4 x 22.2	장K2-2430

규장각에 현전하는 「궁원의」는 13건으로 <표 10>과 같다. 1번(奎2035)은 1780년 신간본 「궁원의」이다. 이 책은 의궤에 기록된 1785년 봉모당 봉안건의 장황 형태인 공격지 2장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뒷공격지가 있는 「궁원의」는 앞공격지가 없이 편제가 대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1번은 뒷공격지가 2장 있으며, 앞공격지는 1장이 있고 그 뒤에 편제가 나온다. 물론 1780년 「궁원의감인청의궤」가 없어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785년의 봉모당 봉안건의 장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2번에서 13번까지는 중간본 「궁원의」이다. 2번·3번·4번은 오대산·정족산·태백산 사고에 봉안한 「궁원의」이다. 5번은 홍문관에 내사한 것으로 [奎章之寶] 와 [弘文館] 인장이 찍혀 있다. 6번·7번·8번은 이문원에 내사한 것으로 [奎章之寶] · [摛文院] 인장이 찍혀 있다. 이들의 내사기는 홍문관의 내사기처럼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內賜弘文館 宮園儀一件 檢校待教臣李(着名)’으로 쓴 것이 아니고 ‘內賜摛文院’이 묵서되어 있다. 8번은 ‘內賜摛文院’이 묵서된 부분이 오래졌으나 뒷면에 먹자국이 남아 있어 글씨를 판독할 수 있다.

9번은 書角 바로 위에 ‘乙巳編摩’라고 묵서되어 있으며, 오른쪽 상단 끝에는 ‘甲’이 묵서되어 있다. 13번은 書背에 司僕寺가 묵서되어 있어 사복사에서 보관하며 열람하였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규장각에 현전하는 「궁원의」의 내사기와 상황

번호	內賜記 및 印章	粧績 및 編題	크기 (cm)	청구기호
1	無	印出紙 : (貼冊紙) 紙衣-面紙1張-空隔紙2張 冊絲 改絲 編題 : 靑色	35.3 × 23.0	奎2035
2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五臺山城史庫上 宮園儀一件: [奎章之寶]	印出紙 : 卷冊紙 紙衣-面紙1張 編題 : 靑色	36.0 × 23.3	奎3790
3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鼎足山城史庫上 宮園儀一件: [奎章之寶]	印出紙 : 卷冊紙 紙衣-面紙1張 編題 : 靑色	36.0 × 23.3	奎2039
4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太白山城史庫上 宮園儀一件: [奎章之寶]	印出紙 : 卷冊紙 紙衣-面紙1張 編題 : 靑色	36.0 × 23.3	奎1935
5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 內賜弘文館 宮園儀一件 檢校待教臣李(着名): [奎章之寶] · [弘文館]	印出紙 : 卷冊紙 紙衣-面紙1張 編題 : 靑色	36.0 × 23.2	奎1892
6	內賜摛文院 : [奎章之寶] · [摛文院]	印出紙 : (卷冊紙) 紙衣-面紙1張, 冊絲 改絲 編題 : 靑色	36.0 × 23.3	奎1891
7		印出紙 : (卷冊紙)	36.0 × 23.3	奎14305

		紙衣-面紙1張, 冊絲 改絲 編題: 青色		
8		印出紙:(卷冊紙) 紙衣-面紙1張 編題: 青色	34.1 × 22.3	奎14306
9	[奎章之寶]	印出紙:(卷冊紙) 紙衣-面紙1張, 冊絲 改絲 編題: 青色	36.0 × 23.3	奎14304
10		印出紙:(卷冊紙)	36.0 × 23.3	奎14302
11	[奎章之寶]	紙衣·冊絲 改粧	36.0 × 23.3	奎1893
12		編題: 青色	36.2 × 23.3	奎1894
13	無(書背: 司僕寺)	印出紙:(白紙) 紙衣-面紙1張, 冊絲 改絲 編題: 黑色	34.4 × 22.1	奎14301

「궁원의」를 장황하였던 粧冊諸員은 교서관에 소속된 金壽耆·徐允喆·李慶漢·徐弼良·金仁大·洪仁玉·黃道信·李枝春·宋福聃·韓國良 이다. 이들 중 한국량을 제외한 모든 책장은 1782년 「국조보감」의 장황을 담당하였었다. 열 명의 책장이 「궁원의」 120건을 7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장황하였으니 책장 한 명이 하루에 6건씩 장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책장 중 金壽耆는 1757년부터 「선원계보기략」의 장황을 담당하였는데, 1785년 「궁원의」를 장황한 것으로 보아 30년 이상을 왕실의 장책 전문가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궁원의」는 「국조보감」이나 「선원계보기략」에 비해 冊數와 印出件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장황을 완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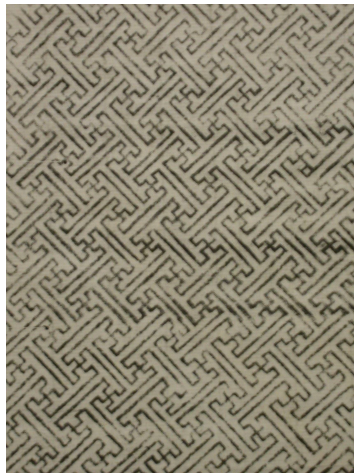
「궁원의감인정의례」에는 「궁원의」를 紙衣를 장황할 경우 필요한 菱花板이나 菱花推造軍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37)</sup> 그러나 현전하는 「궁원의」를 조사해보면 신간본의 紙衣에 사용된 菱花紋은 <그림 3>에서 보듯이 연꽃·능화·唐草가 어우러진 문양이다. 중간본의 능화문은 <그림 4>와 같이 斜格卍字紋이었음을 알 수 있다

36) 조계영, 앞의 논문, 51.

37) 중부시에서 「선원계보기략」을 수정하여 간인할 때에도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능화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실록을 간인할 때 사용한 능화판은 판각할 때 쓰는 자작판이거나 호조에 있는 능화판을 가져다 사용하였다는 의례 기록이 있다. 조계영, 앞의 논문, 39-40.



<그림 3> 新刊本の 菱花紋



<그림 4> 重刊本の 菱花紋

#### 4. 「宮園儀」의 進上 · 奉安 · 頒賜

件別에 따라 장황을 마친 「궁원의」는 8월 9일에 가장 먼저 정조에게 진상하였고, 다음으로 봉모당과 경모궁에 봉안한 후에 반사하였다. 왕실서책의 진상과 봉안은 궤에 담아 거행하였는데, 「궁원의」는 경모궁 봉안건을 담은 궤 하나만을 제작하였다. 봉안궤의 크기는 冊數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는데, 「궁원의」 2책 봉안궤의 높이는 「국조보감」 2책 봉안궤의 2배가 되었다. 경모궁 봉안건 「궁원의」(장 K2-2431A)의 크기가 세로 37.1cm, 가로 23.5cm 이니, 책의 크기보다 5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궤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봉안궤의 외면은 黑眞漆을 하였고, 내면은 「국조보감」의 경우 倭朱紅漆을 하였고 「궁원의」는 唐朱紅으로 칠하였다.

「궁원의」를 봉안하기 하루 전인 8월 8일 申時에 경모궁 봉안건 「궁원의」를 궤에 담아 싸는 封褰式을 거행하였다. 봉과식은 「궁원의」를 紅水紬로 만든 겹보자기로 싸서 봉안궤에 넣고, 봉안궤를 홍수주 홀보자기로 싸는 것이다.<sup>38)</sup> <표 11>은 「국조보감」과 「궁원의」 봉안궤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1> 「國朝寶鑑」과 「宮園儀」 2冊 奉安橫

薄椽板	「國朝寶鑑」 2冊 奉安橫	「宮園儀」 2冊 奉安橫
長	1尺 4寸	1尺 4寸(42.2cm)
廣	1尺	1尺(30.3cm)
高	4寸	8寸(24.2cm)
外面	黑眞漆	黑眞漆
內面	倭朱紅漆	唐朱紅漆

진상건 「궁원의」는 5件 10冊씩 紅木 홀보자기로 싸서 紅假函에 담았다. 감인청은 8월 9일 卯時(오전 5시-7시)에 「궁원의」를 진상하기 위해 「궁원의」를 담은 홍가함 4隻을 架子 2부에 나눠 싣고, 紅木 홀보자기로 덮고 영화당으로 나아갔다. 「進宮園儀儀」는 영화당에서 정조에게 「궁원의」를 올릴 때의 의례이다. 「궁원의」를 진상하는 하루 전인 8월 8일에 掖庭署에서 영화당 앞에 御座를 설치하고, 어좌 앞에 香案·寶案·進書案·展書案을 설치하였다. 典寶는 展書案 앞에 安寶案을 설치하고, 進書案 남쪽에 寶案을 설치하였다.<sup>39)</sup> 1782년 「국조보감」을 진서할 때에는 「국조보감」에 [奎章之寶] 를 안보하기 전에 讀序文官이 「국조보감」의 서문을 읽었다. 그러나 「궁원의」를 진서할 때에는 독서문관을 생략하라는 정조의 명에 의해 서문을 읽지 않고 [奎章之寶] 를 안보하였다.<sup>40)</sup> 이 외의 절차는 1782년 「국조보감」을 진서할 때의 예와 동일하게 거행되었다.<sup>41)</sup>

이 날 辰時(오전 7시-9시)에 정조는 奉謨堂에 나아가 「궁원의」를 奉安 하였다. 이 때의 의주가 「奉謨堂奉安宮園儀儀」이다. 각신이 腰輦에 실린 「궁원의」를 奉出하여 봉모당의 御書櫥에 봉안한 후 封鎖하는 동안 鼓吹가 연주되었다. 정조가 봉모당 안으로 들어가 奉審을 마치면 봉모당에 「궁원의」를 봉안하는 의례의 핵심을 마치게 된다.

정조는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에 경모궁에 나아가 展拜하고 이어서 「궁원

38) 「궁원의감인청의례」 「封表式」.

39) 典寶는 公服을 입은 司卷 2인이 맡았다. 「궁원의감인청의례」, 「進宮園儀儀」.

40) 「궁원의감인청의례」, 八月初八日 “校正堂上入侍時 行判中樞府事李福源所啓 宮園儀進書時 依國朝寶鑑舉例 讀序文官依例磨鍊乎 上曰今番則除之可也”

41) 조계영, 앞의 논문, 96-102.

의」를 親上하였다. 이 때의 의례가 「景慕宮展拜仍行宮園儀親上秋享大祭省牲省器出還宮儀」이다.

정조는 「궁원의」가 경모궁의 典章으로서 사체의 중대함이 「經國大典」이나 「國朝五禮儀」와 같다고 생각하였다.<sup>42)</sup> 成宗이 「경국대전」을 완성한 후에 종묘의 世祖室에 올린 故事를 따라 정조는 1782년 「국조보감」을 종묘 각실에 친상하였다. 정조가 「궁원의」를 경모궁에 친상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였다.

8월 7일에 정조는 「궁원의」를 받들고 경모궁에 나아갈 때 요여에 안치하고 교정제신들이 뒤따르도록 명하였다. 경모궁으로 가는 반차는 冊印을 올릴 때의 예에 따라 駕前陳路하여 弘化門과 館峴을 통과하도록 분부하였다. 「궁원의감인칭의궤」의 반차도에는 細儀仗 30柄과 鼓吹가 앞에서 인도하여 경모궁으로 가는 「궁원의」를 실은 요여가 그려져 있다.<sup>43)</sup> 奉宮園儀官이 「궁원의」를 받들고 廟內에 나아가 案에 놓으면 廟司가 그 밑의 사람들을 인솔하여 宮園儀函을 櫛에 봉안하였다.

7월 20일에 정조는 緞衣로 장황한 「궁원의」1건을 경모궁의 冊印櫛에 봉안할 것을 명하였다.<sup>44)</sup> 儀註에는 冊櫛 혹은 印櫛 몇 층에 「궁원의」를 봉안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경모궁은 正堂의 主壁에 神櫛을 봉안하였으며, 정당의 右間에는 冊櫛을 左間에는 印櫛을 봉안하였다.<sup>45)</sup> 「궁원의」에 나온 冊印櫛 圖說에 의하면 1785년 경모궁 책인장에 봉안된 儀物은 <표 12>와 같다.

42) 「궁원의감인칭의궤」, 「賞典秩」 乙巳八月初九日 “是書 卽本宮典章 事體重大 無異於大典及五禮儀等書 年前寶鑑成書後 親上太廟 旣用英陵朝故事 況是書乎 親上之舉 槩有意也”

43) 「궁원의」의 봉안 행렬과 「국조보감」의 봉안 행렬과의 비교는 조계영의 앞의 논문 12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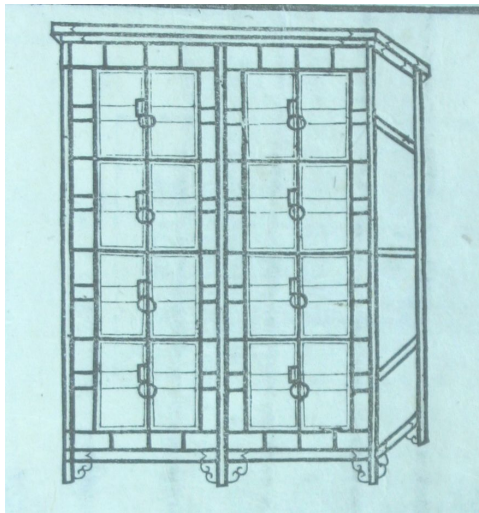
44) 「宮園儀引」 監印廳書啓秩 同月二十日 監印廳 啓曰 宮園儀刊印 今旣畢役 進上日子以今二十二日 推擇之意 敢啓 傳曰 待秋涼 更爲擇日草記 進書後 一件緞衣粧盛櫛 奉安于景慕宮冊印櫛 可也’

45) 「궁원의」 卷之上 「景慕宮儀」 奉安規制’.

<표 12> 1785년 景慕宮 印藏과 冊櫥의 奉安 儀物

層數	印櫥		冊櫥	
	右間	左間	右間	左間
제1층	丙辰 玉印(1736년) [王世子印]	甲辰 玉印(1784년) [思悼綏德敦慶弘仁 景祉莊獻世子之印]	甲辰 竹冊	丙辰 敎命軸
제2층	壬午 玉印(1762년) [思悼世子之印]	-	-	丙辰 竹冊
제3층	丙申 玉印(1776년) [思悼莊獻世子之印]	-	-	丙申 竹冊
제4층	癸卯 玉印(1783년) [思悼綏德敦慶莊獻世子之印]	-	-	癸卯 竹冊

경모궁의 印櫥은 左間の 제2층·제3층·제4층이, 冊櫥은 右間の 제2층·제3층·제4층이 비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 「궁원의」를 담은 櫃를 봉안하였을 것이다. <그림 5>는 「궁원의」圖說에 그려진 경모궁 正堂의 인장과 책장의 모습이다.



<그림 5> 景慕宮 正堂의 印藏·冊櫥

정조는 경모궁에 「궁원의」를 봉안한 후 還宮하여 「궁원의」 賜給에 관한 備忘記를 내렸다. 의궤에는 「賞典秩」이 缺落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內閣日曆」을 통해 「궁원의」 반사와 別單書啓에 대한 賞典을 파악할 수 있다. <부록 2>는 1785년 8월 9일에 반사된 「궁원의」의 내역을 인출지별로 나타낸 것이다. 「궁원의」 반사건은 첩책지 30건·권책지 50건·백면지 10건·백지 10건을 인출하였었다.<sup>46)</sup> 8월 9일에 반사한 「궁원의」는 內入한 첩책지 10건과 권책지 10건을 포함하여 첩책지 30건·권책지 50건·백면지 8건·백지 9건이다. 즉 백면지 2건과 백지 1건을 제외한 모든 반사건이 8월 9일에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첩책지로 인출한 「궁원의」는 규장각의 時原任閣臣에게 반사되었고, 권책지는 규장각과 書庫를 비롯한 관서와 고위관료에게 반사되었다. 백면지는 경모궁과 영우원 비치용과 「궁원의」의 교정과 감인을 담당한 대신들에게 반사되었고, 백지는 檢書官과 司卷 등 규장각 屬官에게 반사되었다. 이는 첩책지로 인출한 「궁원의」를 반사받은 규장각 시원임각신들이 당시 조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이다.

## 5. 맺음말

경모궁·영우원(현릉원) 제도는 고종대에 이르러 바뀌었다.<sup>47)</sup> 1899년에 장헌 세자가 莊宗으로 추존되었다가 같은 해 다시 懿皇帝로 추존되고 묘호도 莊祖로 바뀌면서 현릉원은 隆陵으로 격상되었다. 따라서 경모궁의 神位는 종묘에 祔廟되었고, 경모궁은 景慕殿으로 불리다가 1900년 경모궁 터에 永禧殿이 이건되면서 경모궁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정조초 궁원제가 사도세자에게 적

46) 監印廳의 7월 2일 書啓 에는 반사건 첩책지가 30건으로 나와 있지만, 반사건의 인출과 장황 기록에서는 첩책지가 28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궁원의감인청의궤」 七月初二日 “宮園儀校正堂上 鄭昌聖所啓 宮園儀活字印出 數日間當始役 進上件日前下教外 更不可印乎 上曰 頒賜次貼冊紙三十件 卷冊紙五十件 加印可也”

47) 장경희, 앞의 논문, 177.

용됨으로써 궁원제는 왕의 사친과 조모 뿐만아니라 왕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도세자에 한해 적용되었고 기타 세자와 세손 등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왕세자에게 궁원제를 적용한 전례는 정조대의 일회적인 조치로 그치고 조종전례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궁원의」는 정조가 사도세자에게 ‘莊獻’이라는 존호를 추상한 후 궁원제를 적용하여 景慕宮과 永祐園으로 승격시킨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본고는 「궁원의감인청의궤」의 기록과 장서각과 규장각에 현전하는 「궁원의」를 통해 「궁원의」의 간인과 장황을 고찰하였다. 「궁원의」는 1776년에 편성하여 1780년에 신간하였고 1785년에 중간하였다. 중간본 「궁원의」는 1785년 6월 28일에 出草를 마쳤으며, 7월 2일부터 간인의 역을 시작하여 7월 20일에 인출을 끝냈다. 인출한 「궁원의」는 7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장황하였다. 「궁원의」는 경모궁 봉안건·봉모당 봉안건·진상건·반사건에 따라 장황 재료가 차별되었다.

경모궁의 책인장에 봉안한 「궁원의」는 「선원계보기략」이나 「국조보감」 봉안건과 같이 첩책지로 인출한 후 남대단으로 장황하여 왕실서책의 위격을 갖추었다. 본 논문은 궁원제를 왕실의례로 정리화하는 과정에서 간인된 서책으로서 「궁원의」의 간인과 장황을 조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國朝寶鑑監印廳儀軌」(서울대학교 奎章閣 영인본, 1997년)

「宮園式例補編」(장K2-2427, 1753년)

「宮園儀」(장K2-2428 · 장K2-2432A, 1780년)

「宮園儀」(장K2-2429A · 장K2-2429B · 장K2-2430 · 장K2-2431A · 장K2-2431B · 장K2-2432B, 1785년)

「宮園儀」(奎2035, 1780년)

「宮園儀」(奎1891·奎1892·奎1893·奎1894·奎1935·奎2039·奎3790 奎14301·奎14302·奎14304·奎14305·奎14306, 1785년)

「宮園儀引」(장K2-2433, 1785년)

「內閣日曆」(e-kyujanggak.snu.ac.kr)

「영조실록」

「毓祥宮昭寧園式例」(장K2-2474, 1753년)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弘齋全書」(文化財管理局藏書閣事務所 影印本, 1978년)

## 2. 연구논저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頒賜에 관한 研究.” 「書誌學報」創刊號(韓國書誌學會, 1990).

孫溪鎡.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임민혁. “영조의 사친추숭과 宮園制” 「藏書閣 소장 영조 어제류의 정리 및 해제 연구」(2006).

鄭景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23(2004).

趙啓榮.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績과 保存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6.

朱賽虹. 「古籍修復技藝」. 北京: 文物出版社, 2001.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부록 1> 「궁원의」 목차

目次	重刊本	新刊本
編題	宮園儀 乙巳孟秋 芸閣重刊	宮園儀 庚午孟夏 芸閣新鐫
御製	宮園儀引(李福源 奉教謹書)	宮園儀引(洪國榮 奉教謹書)
宮園儀圖說目錄 景慕宮儀	宮宇	宮宇
	享祀班次	享祀班次
	設饌：五享大祭, 酌獻禮, 俗節朔望	設饌 俗節朔望設饌 酌獻禮設饌
	奉安儀物：神椅·神榻·朱簾·印藏冊 藏·玉印·印蓋·玉印篆文·教命軸·軸 函·教命文·竹冊·竹冊文	奉安儀物：神椅·神榻
	儀仗：雀扇·青蓋	-
	祭器：籩·豆·簠·簋·甗·鉶·爵·坩 玷·瓚·瓚槃·牛鼎·羊鼎·豕鼎·鼎 幕·鼎局·鼎匕·鼎畢·鑿刀·俎·壺 尊·象尊·著尊·壺尊·山尊·簠·龍 勺·洗尊·洗·俎·篚·牛鼎·羊鼎·豕 鼎·鼎幕·鼎局·鼎匕·鼎畢·釜·鑿 鑿刀·毛血槃·牲匣·香爐·香合·卓 匣·匣槃·牲匣(大小牲匣)	祭器：籩·豆·甗·鉶·簠·簋·爵· 坩·玷·瓚·瓚槃·牛鼎·羊鼎·豕 鼎·鼎幕·鼎局·鼎匕·鼎畢·鑿 刀·俎·壺尊·著尊·山尊·犧尊·象尊· 鷄彝·鳥彝·罍彝·黃彝·簠·篚·龍 勺·釜·匣·匣槃·卓·大小牲匣·香 合·香爐·鑿·毛血槃·洗尊·洗
	樂器：金之屬(編鐘·方響·大金)石之屬 (編磬) 絲之屬(牙箏·玄琴·唐琵琶·伽 倻琴·鄉琵琶·奚琴)竹之屬(篪·唐笛· 洞簫·觱篥·太平簫·大琴)匏之屬(笙 土之屬(埙) 革之屬(路鼗·節鼓·晉鼓· 杖鼓)木之屬(祝·敔·拍·麈·照燭)	樂器：金之屬(鐘·編鐘·方響·大金) 石之屬(磬·編磬) 絲之屬(牙箏·唐 琵琶·玄琴·伽倻琴·鄉琵琶·奚琴)竹 之屬(篪·唐笛·洞簫·觱篥·太平 簫·大琴)匏之屬(笙)土之屬(埙)革之 屬(路鼗·節鼓·晉鼓·杖鼓)木之屬 (祝·敔·拍·麈·照燭)
	樂：登歌·軒架	舞器：蠡·籥·翟·劔·槍·弓·矢
	舞：文舞·武舞	樂：軒架·登歌
	舞器：蠡·籥·翟·劔·槍·弓·矢	舞：文舞·武舞
	祭服	祭服
	殿下冕服：圭·冕·衣·衣背·中單·中 單背·裳·蔽膝·方心曲領·革帶·大 帶·綬·佩·襪·寫·遠遊冠·絳紗袍· 袍背·中單·中單背·裳·蔽膝·綬	殿下冕服：圭·冕·衣面·衣背·中單 面·中單背·裳·蔽膝·方心曲領·革 帶·大帶·綬·佩·襪·寫
	王世子冕服：圭·冕·衣·衣背·中單· 中單背·裳·蔽膝·方心曲領·革帶·大 帶·綬·佩·襪·寫·遠遊冠·中單	世子冕服：圭·冕·衣面·衣背·中單 面·中單背·裳·蔽膝·方心曲領·革 帶·大帶·綬·佩·襪·寫
	祀官祭服：笏·冠·衣·中單·裳·蔽膝 方心曲領·革帶·大帶·綬·佩·襪·履	文武官冠服：笏·冠·衣面·衣背·中 單面·中單背·裳·蔽膝·方心曲領· 革帶·大帶·綬·佩·襪·履
工人冠服：幘頭·介幘·綠綃衫·藍紬衣· 白紬中單·赤裳·赤抹帶·烏鞞帶·白布	-	

朝鮮後期「宮園儀」의 刊印과 粧績

		襪・黑皮靴・烏皮履	
		尺度(布帛尺半・周尺全・營造尺半・造禮器尺半)	尺度：布帛尺半・周尺全・營造尺半・造禮器尺半
永祐園儀		丁字閣	丁字閣
		享祀班次	享祀班次
		設饌：忌辰祭・節祀	設饌
宮園儀儀註目錄	卷之上…景慕宮儀	奉安規制	總敍 奉安規制
		祭享式例	祭享式例
		雜禮	-
		宮司率屬	宮司率屬
		辨祀	辨祀
		時日	時日
		祝式	祝式
		樂章	樂章
		五享親祭儀	五享親祭儀
		酌獻禮儀	酌獻禮儀
	卷之下…永祐園儀	展拜儀	展拜儀
		由日瞻門展拜儀	-
		五享攝事儀	五享攝事儀
		俗節朔望祭儀	俗節及朔望祭儀
		薦新儀	薦新儀
		追上尊號儀	-
		御製碑文	總敍
		象設規制	象設規制
		祭享式例	祭享式例
		雜禮	-
園司率屬	園司率屬		
時日	時日		
祝式	祝式		
展拜儀	展拜儀		
忌辰祭儀	忌辰祭儀		
附錄	附錄		
		跋	跋
		(座目) 奉教編修・奉教增補	(座目) 奉教校正・奉教監印

<부록 2> 1785년 8월 9일 重刊本 「宮園儀」 賜給(內閣日曆)

貼冊紙	卷冊紙	白綿紙	白紙
提學 金鍾秀	奎章閣 上(2건)	景慕宮上	閣屬官 李德懋
提學 吳載純	書庫(10건)	永祐園上	閣屬官 柳得恭
檢校直提學 鄭民始	外奎章閣	校正大臣 行判中樞府使 李福源	閣屬官 朴齊家
檢校直提學 徐浩修	五處史庫(5건)	行工曹判書 金華鎮	閣屬官 徐理修
直提學 朴祐源	承政院	漢城府判尹 鄭昌聖	閣屬官 全大重
檢校直閣 李秉模	玉堂	安東府使 柳義養	閣屬官 趙壽業
檢校直閣 徐龍輔	成均館	原春監司 李時秀	閣屬官 張世經
檢校待教 李崑秀	議政府	行副司直 金字鎮	閣屬官 李興潤
檢校待教 尹行任	吏曹	-	閣屬官 金致俊
原任提學 李徽之	禮曹	-	-
原任提學 黃景源	戶曹	-	-
原任提學 徐命膺	兵曹	-	-
原任提學 蔡濟恭	景慕宮都提調 領中樞府事 金尙詰	-	-
原任提學 俞彥鎬	奉朝賀 金致仁	-	-
原任直提學 徐有防	領敦寧府事 鄭存謙	-	-
原任直閣 金憲	行判中樞府事 徐命善	-	-
原任直閣 金勉柱	議政府左議政 洪樂性	-	-
原任直閣 徐鼎修	行判中樞府事 金煜行	-	-
原任直閣 金載瓚	承政院都承旨 沈豐之	-	-
原任直閣 鄭東浚	左承旨 李度默	-	-
-	右承旨 趙興鎮	-	-
-	左副承旨 李祖承	-	-
-	右副承旨 柳綱	-	-
-	同副承旨 金夢華	-	-
-	前提調 尹塾	-	-
-	景慕宮令 吳翼煥	-	-
合 貼冊紙 20件	合 卷冊紙 40件	合 白綿紙 8件	合 白紙 9件